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8-82호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출일 : 2018년 11월 12일
- 회부일 : 2018년 11월 19일

2. 제안이유

- 최근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주택정책의 패러다임도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우리시가 추진하는 주거복지 시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7조)
- 주거복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4.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1)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2)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비용추계서) : (붙임3)
-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입법예고 : 2018. 10. 13. ~ 2018. 11. 1.(20일간)

- 기타참고사항

-방침결정문 (붙임 4)

5. 검토의견

□ 필요성 및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주택정책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고 「주거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주거복지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이에 안산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지원계획 수립 · 시행, 그리고 합리적 ·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정책 · 사업 추진을 위한 주거복지 위원회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안산시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거 약자 등에 대한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5조(주거복지지원계획의 수립)에서 시장은 「주거기본법」 제5조 및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상황에 맞는 안산시 주거복지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주거복지사업

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7조(주거복지사업)에서 임대주택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집수리 지원사업,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은 주거약자 등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사항으로, 안산시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9조(주거복지위원회)는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주거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거복지 지원 계획수립과 주거복지사업 운영평가,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되 필요시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10조(주거복지센터)는 늘어나는 주거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주거복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복지 정책과 센터의 효율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시민행복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위탁시 센터의 충실한 운영과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임.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 및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주거복지지원계획·주거실태조사·주거복지사업·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지원 사업 등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시민행복과 주거복지자를 위해 주거복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주거복지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 이로써 변화하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시민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안산시 의료급여가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8-70호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출일 : 2018년 11월 12일
- 회부일 : 2018년 11월 19일

2. 제안이유

- 개정된 지방재정법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 5. 28.」에 의하여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봄에 따른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자 조례개정 추진

3.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함(안 제2조의2)

4.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 붙임1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4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비용추계서) : 불임4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8. 10. 26. ~ 2018. 11. 05. (10일간)
- 현행조례 : 불임5
- 방침결정문 : 불임6

5. 검토의견

- 「안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개정된 「지방재정법」(법률 제12687호, 2014. 5.28.)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개정법 시행일(2014.11.29.) 기준으로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 안 제2조의2(특별회계 존속기한)를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지방재정법」 규정에 합치시키려는 개정사항으로 상위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됨.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8-69호
-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 출 일 : 2018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18년 11월 19일

2. 제안이유

-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2014년 5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수탁자: 사회복지법인 안산제일복지재단)의 위탁계약이 2019. 4월 종료됨에 따라
-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안산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시 설 명 :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76(초지동)
- 위탁기간 : 2019. 5. 1. ~ 2029. 4. 30. (10년)
※ 재위탁(공개모집) 기간 : 2019. 5. 1. ~ 2024. 4. 30.(5년)
- 시설규모

- 초지종합사회복지관 4,826m², 대부도복지센터 45m², 둔배미복지센터 589m²
- 운영인력 : 23명(관장 1, 부장 1, 과장 5, 직원 16)
 - 초지종합사회복지관 16명, 대부도복지센터 3명, 둔배미복지센터 4명
- 운영예산 : 949,276천원(2018년도)
 - 초지종합사회복지관 749,881천원, 대부도복지센터 137,285천원, 둔배미복지센터 62,110천원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사업일체
 - 사례관리기능
 - 서비스제공기능
 - 지역조직화기능
 -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 복지 증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위탁(공개모집)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11조
-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제7조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며 주민들에게 원활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합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 「안산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자격을 갖춘 전문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4. 예산수반사항

2019년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 1,142,024천원

- 초지복지관 : 786,197천원
- 대부도복지센터 : 152,827천원
- 둔배미복지센터 : 203,000천원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법인의 위탁기간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사무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임.
-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앞으로 추진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공개모집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 선정 후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탁의 취소 등 위탁 조건을 면밀하게 정하여 협약 체결 후 위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8-84호
-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 출 일 : 2018년 11월 12일
- 회 부 일 : 2018년 11월 19일

2. 제안이유

-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기기 보급은 지원되고 있으나 수리비용 지원 및 전문적인 수리센터가 없어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음.
- 해당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므로써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안산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시 설 명 : 안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중앙역 앞)
- 위탁기간 : 2019. 2. 20. ~ 2022. 2. 19.(3년, 예정)
- 시설규모 : 지상1층, 건축면적 96.36m²
- 운영인력 : 3명(주 수리기사1, 보조 수리기사 1, 사회복무요원 1)
- 운영예산 : 100,000천원(2019년도 본예산 요구액)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안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일체
 - 부품교체 및 보장구 사후관리
 - 내방수리 및 출장수리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 제5조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장애인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오랫동안 숙련된 기술을 가진 전문수리기사를 보유한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보장구 이용 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복지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 「안산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자격을 갖춘 전문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4. 예산수반사항

2019년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 100,000천원

- 인건비 : 31,000천원
- 운영비 : 14,000천원
- 사업비 : 55,000천원

5. 검토의견

취지 및 이유

-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안산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임.

주요 내용별 검토

- 장애인 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센터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지원 및 보급률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 보조기구를 전문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장애인들의 불편이 있었기에 장애인 이동기기 전문 수리센터 구축을 목적으로 시비 100%를 지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임.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며, 보조기구 수리 대상은 전동(수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 한정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이동보조 기구가 가장 보급률이 높고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이며, 이동보조 기구 이외의 다른 보조기구에 대해서는 수리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없는 실정임.

- 이와 관련 시에서도 2019년도 본예산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센터 운영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는 저소득 장애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들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수리 요청이 있을 경우 방문 수거 및 수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임.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기기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수리를 위한 신청 및 수리 후 전달까지의 절차 진행, 그에 따른 일련의 행정서비스 등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8-71호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출일 : 2018년 11월 12일
- 회부일 : 2018년 11월 19일

2. 제안이유

- 안산시민에게 수요자 중심의 가족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가정을 육성하고자 설치·운영 중인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수탁자: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의 위탁기간이 2018. 12. 31. 자로 종료됨에 따라,
- 수요자 중심의 통합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산시 건강가정지원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의회 동의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간)
※ 기존 : 2017. 1. 1. ~ 2018. 12. 31.(2년)
⇒ 최초위탁 : 2005. 6월 경기도 최초 위탁 개소
- 대상시설 :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310.61m^2)

- 위치 :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32(성포동, 홈플러스 1층)
- 수탁법인 : (사)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운영인력 : 15명(상근 센터장 1, 팀장 4, 팀원 10)
- 사업비 : 2,027백만원(운영비 222, 사업비 1,805백만원)

나. 주요 위탁내용

- 건강가정 지원사업(가족교육 · 상담 지원)
-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사업
- 미혼모 · 부 초기 지원사업
-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 아이돌봄 지원사업
-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다.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위탁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운영

라. 재위탁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시행규칙 제6조(위탁운영)
-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위탁운영)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마. 재위탁 추진 필요성

- 건강가정 육성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가족통합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이 요구되는 건강가정지원 센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존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는 수탁업체에 대하여 위탁기간 2년간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재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 위탁사무의 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에 관한 것이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등 특이사항은 없음.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였고, 향후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 위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위탁운영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8-88호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출일 : 2018년 11월 12일
- 회부일 : 2018년 11월 19일

2. 제안이유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하여 사전절차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산시의회 동의를 위한 규약(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고 가입절차를 밟고자 함.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5조 의거)

※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이며, 기존 아동 친화도시인증을 받은 도시와 인증 추진 중인 도시가 준비단계에서부터 지역 간 협력을 도모해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 아동친화 도시 인증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의 경계를 넘어 협업해 모든 사람이 살기좋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음

3. 주요내용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현황

-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시 : 도봉구(이동진 구청장) (2018.9.13.~)
 - 가입현황 : 61개 지자체 / 31개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인증 (2018.10월말기준)
 - ☞ 현재 규약의 별표1에는 2018.8.31.기준으로 59개 지자체로 작성되어 있으나, 9월 이후에 인천광역시, 전남 장흥군이 추가 가입함
- ※ 경기도 : 인증완료 4(광명, 수원, 오산, 화성)
준비 중 3(부천, 시흥, 용인)

□ 지방정부협의회가입 절차

1. 협의회 규약을 지방의회(안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법 제152조 의거 고시
2.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협의회 가입 신청서 제출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무국 승인 후, 부담금(연회비) 납부

□ 규약 주요내용

○ 제1조(목적)

-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제2조(기능)

-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
-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
-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됨

○ 제4조(임원 및 조직)

-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 2인, 고문 등을 두며 임원진 외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자문단 등을 구성할 수 있음

○ 제5조(임원의 임기)

-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해당 단체장의 임기로 함

○ 제6조(회의 및 의결)

- 회장은 협의회 총회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장이 됨.
- 협의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함

○ 제7조(의안의 제출)

- 회장은 회의개최 30일전까지 각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 관계기관 및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함

○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그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함

○ 제11조(실무협의회 등)

- 실무협의회는 협의체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소속 자치단체에서 주관함.

○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통보하여야 하며, 참여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함.

○ 제16조(가입 및 탈퇴)

-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함.
-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함.

4. 검토의견

- 본 규약안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정보·우수 사례 상호교환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기구인『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구성에 따른 운영 규약안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실현을 목표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연대·협력하여 아동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5년 결성되었으며, 현재 서울 특별시 등 기초와 광역을 포함한 6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음(2018년 10월 말 기준).
- 규약안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기능, 구성, 회의절차, 예산·결산, 임원과 그 임기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협의회에 참여한 각 자치단체간 규약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 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동정책의 지속성 및 확장성을 도모하고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8-90호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출일 : 2018년 11월 12일
- 회부일 : 2018년 11월 19일

2. 제안이유

-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및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계약기간이 만료 됨.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적의 위탁기관을 재선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 개요

- 안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 구 분 |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
| 소재지 |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초지동) |
| 시설규모 | 180㎡(사무실, 소회의실, 상담실, 탕비실) |
| 수탁기관 |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 | |
|--------|--|
| 수탁기간 | 최초 : 2013. 05. 27. ~ 2015. 12. 31.(2년 6월) 재계약 : 2016. 01. 01. ~ 2018. 12. 31.(3년) |
| 센터구성 | 17명(센터장1, 기획·운영팀4, 영양팀6, 위생팀6) |
| 사업내용 |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의 식품·영양·위생·교육 등 지원 |
| 국비보조사업 | 800백 만원(국비50%, 도비7.5%, 시비42.5%) |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명 :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3년(2019. 1. 1 ~ 2021. 12. 31.)
- 위탁사무 :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일체
 -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 등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 지원 사업
- 보조금 지원(2019년) : 800,000천원(국비50%, 도비7.5%, 시비42.5%)
- 재위탁 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심사

다.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위탁내용
 - 위탁명 :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3년(2019. 1. 1 ~ 2021. 12. 31.)
 - 위탁사무 :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일체
 -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 등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 지원 사업
 - 보조금 지원(2019년) : 800,000천원(국비50%, 도비7.5%, 시비42.5%)
 - 재위탁 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심사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시설의 위탁)」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11조

라. 재 위탁의 필요성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위생·영양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등록급식소 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 식품관련 전문 인력의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인 어린이식생활개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시 직영 운영 시 별도의 법인 설립 및 필수 인력 증원 필요
- 안산시 어린이 식생활개선사업의 기반 구축과 센터 운영의 연속성 및 전문성 등 효율적 관리가 가능함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2016. 1. 1. ~ 2018.12.31.)이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및 안전한 급식제공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나, 『안산시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 제3항에서 “시장은 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며,

-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있어 유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영양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식단과 레시피 등의 급식관리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와 영양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8-59호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출일 : 2018년 11월 12일
- 회부일 : 2018년 11월 19일

2.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함.

3. 주요내용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 취득 추정가격 2,644,000천원임.

(단위 : m², 천원)

| 일련 번호 | 재산표시 | | | 추 가 정 액 | 취득 시기 | 취 득 사 유 | 취득부서 |
|----------|------|--------------------|-------|------------------|----------|------------------|-------|
| | 구분 | 소재지 | 수량 | | | | |
| | | 계 | 4,768 | 2,644,000 | | | |
| 1 | 건물 | 단원구 대부북동 1960-1 | 500 | 1,510,000 | 2020 |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 보육정책과 |
| 2 | 토지 | 장상동 437-4 등 4필지 | 4,199 | 1,000,000 | 2020 | 하늘공원 편의시설 확충 | 위생정책과 |
| | 건물 | 부곡동 산12 | 69 | 134,000 | | | |

4. 세부내역

1) 시립대부영아 어린이집 건립

가 제안이유

- 단원구 대부지역은 지리적으로 도시의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있고, 도농복합지역으로 지리적 여건상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이 도시지역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아동을 맡길 시설이 부족하여 인근지역인 인천, 시흥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부모로부터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확보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민·관협력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대부지역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신축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현 황

○ 대부도 연령별 아동인구현황

| 계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 만5세 |
|------|-----|-----|-----|------|-----|-----|
| 184명 | 26명 | 23명 | 32명 | 34명 | 33명 | 36명 |
| | 81명 | | | 103명 | | |

※ 2018. 6월말 기준, 안산시 통계연보

○ 대부도 어린이집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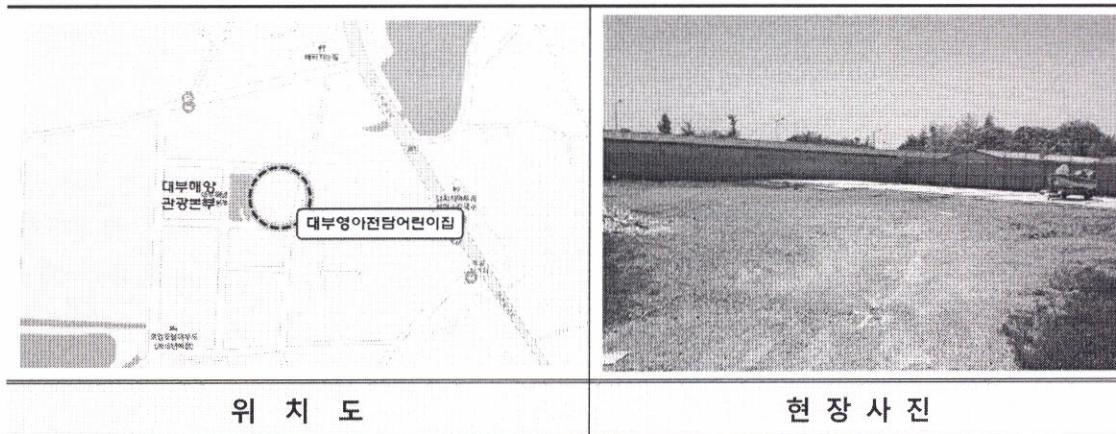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 영아 | | 유아 | | 대기자수 | | | | |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 시립대부어린이집 | 22 | 22 | 57 | 45 | 13 | 14 | 7 | 0 | 0 | 0 |
| 민간어린이집 | 17 | 17 | 18 | 16 | 2 | 3 | 2 | 0 | 2 | 1 |
| 계 | 39 | 39 | 135 | 91 | 15 | 17 | 9 | 0 | 2 | 1 |

※ 2018. 8월말 기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960-1번지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건폐율 60%, 용적률 200%)
- 지구단위계획(지정용도) : 노유자시설
- 규모 : 연면적 500m² / 지상1층 / 정원 58명(영아전담)
- 세부 건축계획

| 구분 | 산 출 내 역 | 면 적 |
|----|-------------------------------|-----------------------|
| 1층 | 보육실, 유희실, 원장실, 교사실, 화장실, 주방 등 | 500m ² |
| 실외 | 놀이터, 주차장 등 | 85m ² , 9대 |

※ 부설주차장 법정주차대수 3대(시설면적 200m²당 1대)이나 지역 특성상 [보육교사*1/3(4)+법정주차대수(3)+통학버스(1)+장애인(1)] 9대 적용

- 건축방법 : 하나금융그룹(사공사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 건립 후 시에 기부채납
- 사업비 : 1,580백만원
 - 공사비 : 1,510백만원 (하나금융 906, 국 302, 도 151, 시 151)
 - ※ 민관 사업비 부담비율 6:4
 - 기자재비 : 10백만원 (국 50%, 도 25%, 시 25%)
 - 기자재비(시비추가) : 60백만원 (시비 100%)
- 사업비 산출근거

| 구 분 | 산출내역 | 소요예산(천원) | 비 고 |
|------------|--|-----------|-----|
| 사업비 총계 | | 4,443,300 | |
| 소요예산 | 사업비 총계-토지비용 | 1,580,000 | |
| 신축공사비 | 500m ² × 2,783천원/m ² | 1,391,500 | |
| 실시설계비 | 1,391,500천원 × 5.7% | 79,000 | 공사비 |
| 감 리 비 | 1,391,500천원 × 2.83% | 39,500 | |
| 기자재비 | 70,000천원 × 1식 | 70,000 | |
| 토지비용(공시지가) | 1,000천원 × 2,863.3m ² | 2,863,300 | |

※ 조달청 2016 공공건축물 유형별(노유자시설) 공사비(2,420천원/m²) 단가에
도서지역 할증(15%) 적용

※ 본 사업의 건립예정지는 안산시 소유의 토지로, 토지비용은 소요예산에 미반영

○ 배치현황 : 보육실 7, 유희실, 화장실, 조리실, 원장실, 교사대기실 등

○ 보육교직원 : 14명(원장 1, 보육교사 12, 조리원 1)

○ 연령별 반구성

| 구분 | 계 | 0세반 | 1세반 | 2세반 | 시간제보육 |
|-------|----|-----|-----|-----|-------|
| 반수(개) | 12 | 4 | 4 | 3 | 1 |
| 정원(명) | 58 | 12 | 20 | 21 | 5 |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건립 사업예산

- 신축건립비 : 1,510,000천원(민간 60%, 국 20%, 도 10%, 시 10%)
- 기자재비 : 10,000천원(국 50%, 도 25%, 시 25%)
- 기자재비(시비추가) : 60,000천원(시비 100%)

□ 추진사항 및 계획

-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신청 : 2018. 7. 18.
-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선정 : 2018. 9. 11.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 2018. 9. 21.
- 투자심사 : 2018. 10. 12.
- 2019년 본예산 편성(민간위탁사업비) : 2018. 10월
- 협약체결 : 2018. 10. 22.
- 공유재산취득심의 : 2018. 10. 31.
-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 2018. 11월
- 기본 및 실시설계 : 2019. 1월 ~ 2019. 6월
- 공사 추진 : 2019. 7월 ~ 2020. 2월
- 기부채납(하나금융→안산시) : 2020. 2월
- 어린이집 개원 : 2020. 3월

다. 검토의견

-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여성 인력의 경제 참여율제고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하여 하나금융그룹과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보육 취약지역 등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 보육취약지역인 대부분의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 신뢰와 민·관 협력 방식을 통한 시재정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2) 하늘공원 편의 시설 확충사업

가 제안이유

- 하늘공원 내 장사시설 대비 부족한 편의시설(주차장 및 관리소)로 하늘공원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 현재 30면에 불과한 주차장을 확충(115면 확충)하고, 협소한 관리사무소 공간을 증축함으로써, 하늘공원 방문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상록구 부곡동 산12번지 일원
- 사 업 량 : 주차장 조성 $4,465\text{m}^2$ (115면), 관리사무소 증축 69m^2
- 사업기간 : 2019. 1. ~ 2020. 10.
- 총사업비 : 2,570백만원
 - 실시설계비 : 70백만원
 - 토지보상비 : 1,000백만원
 - 공사비 : 1,500백만원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 현장사진 |
|---|--|
|  |  |

□ 추진계획

- 실시설계용역 : 2019. 01. ~ 06.
- 토지보상 : 2019. 01. ~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0. 03. ~ 10.

다. 검토의견

- 하늘공원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와 관리사무소 공간을 증축함으로써 방문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안산시 정신보건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8-57호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출일 : 2018년 11월 12일
- 회부일 : 2018년 11월 19일

2. 제안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부합개정
- 안산시 정신건강증진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보완 정비

3. 주요내용

- 「안산시 정신보건증진 조례」에서 「안산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으로 제명 변경
- 현 상위법령 상 중복기재 내용 정리 삭제 (현행 제2조~제3조)
-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보완하였음 (안 제4조~제6조)
- 상위법령 및 준용 조례 추가함 (안 제7조~제10조)

4.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붙임1)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2)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해당사항 없음 (붙임3)
-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8. 8. 20. ~ 2018. 9. 8. (20일간)
- 기타참고사항
 - 현행조례 (붙임4)
 - 방침결정문 (붙임5)

5. 검토의견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어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법령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 법률의 명칭·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 및 관련 용어를 변경함.(안 제1조)
- 안산시장은 매년 안산시 정신건강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 시장은 정신건강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산시 정신 건강복지센터 및 안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
(안 제4조 부터 제6조)

□ 종합의견

- 2016. 5. 29.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7. 5. 30에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안산시 정신보건증진 조례」에서 「안산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로 변경하고,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임.
-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안산시 정신보건증진 조례」의 근거 법률의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을 보완하였음.
-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안산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본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됨.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8-75호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출일 : 2018년 11월 12일
- 회부일 : 2018년 11월 19일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의 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일부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짐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직접 존속기한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4조(세출)의 하위번호로 존속기한 조문 삽입(안 제4조의2(존속기한))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붙임1)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2)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붙임4)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8. 10. 26. ~ 2018. 11. 05. (10일간)
- 현행조례 (붙임5)
- 방침결정문 (붙임 6)

5. 검토의견

-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개정된 「지방재정법」(법률 제12687호, 2014. 5.28.)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개정법 시행일(2014.11.29.)기준으로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 안 제4조의2(존속기한)를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지방재정법」 규정에 합치시키려는 개정으로 상위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이번 개정안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됨.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8-65호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출일 : 2018년 11월 12일
- 회부일 : 2018년 11월 19일

2. 제안이유

- 기존 대부도관광안내소·시화호조력발전소 관광홍보관 및 안산시 관광홍보차량 등 위탁기간이 2018. 12. 31.자로 만료되고 안산역관광안내소 등 시설이 확충 운영됨.
-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관광사업자 및 주민 교육,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관광통계 및 관광주간 등 관광 진흥사무를 추진하여 민간 주도의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 상기 사업을 망라한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관광 관련 법인 및 민간단체에게 동 사업을 위탁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안산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기 간 : 2019. 1. ~ 2021. 12. 31.(3년)
- 사업장소 : 안산시 일원(근무장소 : 관광안내소 등)
- 사업방식 : 민간위탁사업
- 주요내용 :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1식
 -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 대부도·안산역관광안내소, 시화호조력발전소 관광홍보관, 관광홍보차량
 - 관광홍보사업
 - 관광수용태세 교육 및 주민 견학사업
 - 관광통계, 관광주간, 관광단체협력, 관광시설 홍보사무 등
- 年 소요예산 : 265,000천원

나. 주요 위탁내용

○ 대부도관광안내소

- 운영기간 : 연중 10:00 ~ 17:00(주 35시간, 주말 근무)
- 운영인력 : 관광안내원 2명
- 사업내용 : 시설관리, 관광안내 및 홍보
 - 안내원 채용(2명) 및 인력·안내소 시설 유지관리
 - 내방객(전화 포함) 관광안내, 시정 홍보, 각종 편의제공
 - 대부도 관광객 대상 ‘느린우체통’ 사업, 시설 유지관리 등

○ 안산역관광안내소

- 운영기간 : 연중 10:00 ~ 17:00(주 35시간, 주말 근무)
- 운영인력 : 관광안내원 2명(외국어 가능자)
- 사업내용 : 시설관리, 관광안내 및 홍보
 - 안내원 채용(2명) 및 인력·안내소 시설 유지관리
 - 방문객(전화 포함) 관광안내, 시정 홍보

- 안내소 시설 유지관리 등

○ 시화호조력발전소 관광홍보관

- 운영기간 : 연중 10:00 ~ 16:00(단, 월요일 휴관)
- 운영인력 : 문화관광해설사 1인 배치
- 사업내용 : 시설 및 물품 관리
 - 시화호조력발전소 관광홍보관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 관광 홍보물 배부, 문화관광해설사 현장관리 등

○ 관광홍보차량

- 운영기간 : 주 4회 운영
- 운영인력 : 홍보차량 운행요원 2명
 - 소규모 행사 및 일상적 홍보 : 1회 1인 운영
 - 대규모 행사 및 전략적 홍보 : 1회 2인 운영
- 장 소 : 시내권 특화거리, 관내 및 수도권 대규모 행사장
- 사업내용 : 1톤 포터 차량 활용 관광안내 및 홍보
 - 안산시 주요 관광명소, 관광지, 교통·숙박 등 관광정보 제공
 - 관광(축제) 홍보물 배포 및 안내, 안산시 홍보 영상물 상영
 - 관광홍보차량 운행 및 차량 유지관리 등

○ 관광홍보 및 교육사업

- 운영기간 : 연중 09:00 ~ 18:00(주 40시간)
- 장 소 : 대부도관광안내소 2층
- 운영인력 : 총괄간사 1명(관광안내원 2명 보조)
- 사업내용 : 관광홍보 및 교육사업 1식

| | |
|-------------------|---|
| 위탁사무 총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도·안산역관광안내소, 관광홍보관, 관광홍보차량 총괄 관리 예산집행 및 관광안내원(운행요원) 관리 등 |
| 관광수용태세 교육 및 견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수용태세 교육(주민 및 관광사업체 대상 / 월 1회) 국내 우수 관광지 벤치마킹(주민 및 관광사업체 대상 / 2회) |
| 관광통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주요 관광시설 관광객 통계 작성(월 1회) 무인계수기 통계 관리 및 대부도 차량 진·출입 DB 작성 |
| 관광주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주간 업무 총괄(겨울, 봄, 가을) 관광시설 입장료 할인, 관광시설 연계 홍보 등 |
| 관광단체 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관광 관련 기관·단체 협력사무 지역관광협의회 창립 지원(관광진흥법 제48조의9) |
| 관광시설 홍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관광시설 통합 홍보물 제작 및 배포사업 관광시설 홍보 마케팅 지원 사무 |

다.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65,000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 주 요 사 항 | 금 액 | 비고 |
|--|--|---------|---------|
| 합 계 | | | 265,000 |
| 대부도·안산역 관광안내소 및 시화호조력발전소 관광홍보관 운영 | 소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괄간사(1인) 및 관광안내원(4인) 인건비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비 | 214,189 | |
| 관광홍보차량 | 소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 안내요원(3인) 활동비 차량 유지관리비 | 22,023 | |
| 관광홍보 및 교육사업 | 소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홍보 관광수용태세 교육, 관광통계 등 | 28,788 | |

※ 세부내역 : 붙임 3

라.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시장은 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안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5조제9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민간위탁 사무)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3. 문화·관광·예술·영상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제6조(관광안내소) ③ 시장은 관광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광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광 사무의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마.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주민교육 및 관광 홍보사업 등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관광 관련 법인 및 민간단체에게 동 사업

을 위탁하여 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의 실질적 소득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4. 참고사항

1. 위탁시설 세부 현황 1부.
2. 방침문서 1부.
3. 위탁사업비 산출내역(안) 1부.
4. 관광안내소 위탁운영 현황(2018. 현재) 1부.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와 주민 교육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民間에 사업을 위탁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관광안내소 운영은 기존 민간위탁 운영의 기간 만료로 인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 있다고 사료됨.